

교회 결혼 특별위원회 보고서 요약

(Executive Summary of the Ecclesiastical Marriage Task Force Report)

I. 보고서 개요

2019년 총회의 위임을 받은 교회 결혼 특별위원회는 교회 결혼(*ecclesiastical marriage*)의 타당성, 적법성, 도덕성에 관한 질문과 목사나 장로가 커플로부터 교회 결혼 예식을 주재해 달라는 특정한 요청을 받을 경우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했다. 총회는 특별위원회에 교회 결혼의 법률적 측면, 함의, 적법성, 윤리적 문제에 관해 연구하고 어떤 질문이나 이에 관련한 목양에 대해 염려를 언급하도록 위임하였다. 교회 결혼에 관한 수 많은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이런 식의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커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교회 결혼의 정의를 고찰하며, 교회 결혼예식의 실행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성경적, 신학적, 법적으로 연구 하였으며, 타교단의 자문을 구하였다. 이 연구를 마친 후, 특별위원회는 교회 결혼의 타당성에 관해서, 그리고 특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러한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목양할 것인지에 대해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교회 결혼을 고려하는 예비부부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결혼을 고려했거나 심지어 그런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다시 사랑을 찾은 만혼 커플의 경우에서 부터 양 쪽 문화에 걸쳐져 있는 이민자 커플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결혼식 관습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 부채를 걱정하는 젊은 커플들,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 속에 놓여진 커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각각의 상황에는 각기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1) 무엇이 결혼을 “만드는지” (2) 이러한 결혼 관계로 인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3) 복미의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교회의 의무는 무엇인지 등이다.

각각의 상황은 또한 교회 결혼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는 질문들과 목양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응답하기 위하여 교회 결혼의 정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 연구를 요구한 총회의 위임과 최초 제안을 이용하여 특별위원회는 교회 결혼예식을 ‘국가 (시민정부) 가 아닌 교회가 보는 앞에서 승인되고 거행되는 결혼¹’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교회 결혼예식을 종교적인

¹ 2019년 총회회의록, 안건 14, 518 쪽

결혼과 구분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예배/의식/기념과 구분하였다. 왜냐하면 교회 결혼이 의도적으로 국가의 승인과 권력의 통치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교회 결혼을 집행할지의 문제를 두고 특별 위원회는 결혼 이라는 문제에 있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성경과 개혁주의 전통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묘사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했다. 먼저 성경에서 특별위원회는 결혼과 관련된 의무사항들이 명시된 성경 구절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함의는 여러 문서와 설명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 지참금이나 그와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계약 등 그들이 받아들인 결혼을 위한 절차상의 기준 안에서 행동 했다. 결혼은 상호간의 의무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해 되었고, 이혼에 관해서도 법적 규정이 존재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결혼이 구성되어야 한다가나 종교적 혹은 국가적 권위가 그에 관여한다는 등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없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을 승인받기 위해 지역의 관습을 준수하고 관료들에게 협조 하였으며 사도들은 국가 권위를 존중하고 중시하라고 독자와 청중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구약과 신약 성경은 모두 결혼을 창조적, 사회적 선이라고 보고, 민법이 특히 타락 이후의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 의도된 선이라고 가르친다. 요약하자면, 성경에 정해진 결혼 형식 혹은 의식은 없지만 성경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결혼에 관하여,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양 측의 결혼 당사자들과 결혼에 관한 의무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성경 해석에 따라 개혁주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를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며 결혼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로 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국가가 결혼에 관한 관리, 규율, 등록 등에 대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의 영역에 근거를 두고 각각 제 역할을 하면서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와 국가에 이중으로 그러나 상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접근 방식은 결혼에 관한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에 근거하며 특히 결혼을 창조 때부터 신성하게 안수하신 제도로 보며 결혼의 개념을 언약으로, 결혼에 대한 헌신을 사회적 선으로 보는 것에 근거한다. 특별위원회는 결혼 집례를 위한 총회토의와 형식 및 결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1980 년 선언문을 근거로 북미주 개혁신교회가 개혁주의 전통을 따른다고 본다.

성경과 개혁주의 전통의 근거를 연구한 뒤, 특별위원회는 결혼과 기독교 결혼의 법적 함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 걸쳐서 기독교 결혼에 대한 질문들에 동일한 접근 방식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법적 함의를 살펴 보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이 보고서의 부록에서 캐나다 상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가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에 제공된 자료가 관련 되긴 하지만 확실히 완전하거나 포괄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는 교회 결혼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법적 함의와 도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법적 결혼 대신 교회 결혼을 통해 사람들이 피하려고 했던 의무나 책임에 관한 예들이 많이 존재 한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교회 결혼이 초래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 특히 배우자의 무능력, 죽음, 혹은 부부관계 파경과 같은 관계의 급진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교회는 교회 이혼 허락을 고려할 것인가?) 법은 불의한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누구든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때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을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혜로운 처신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민 단체의 특정한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드러내 놓고 교회 결혼을 선택한다면 (예: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혹은 사회보장제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교회가 사기를 돕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속임수이며 위법이므로 실행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 안에서 '하나되게'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새로운 충성과 새로운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성경적, 신학적, 법적 문제 연구와 더불어 특별위원회는 교회, 목회자, 구성원을 위한 목양이라는 주제로 눈길을 돌렸다. 각각의 상황이 매우 다르지만 특별위원회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로, 이 보고서에서 정의한대로 특별위원회는 결혼을 고려하는 모든 커플들이 본 보고서에서 정의한 교회 결혼으로 혼인하기 않기를 심각하게 조언했다. 둘째, 특별위원회는 과정상에서 국가를 완전히 제외시키지 않는 한, 국가가 처음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개입하는 임시적인 예외는 허용했다.

셋째, 보고서는 목회자들이 교회 결혼을 집례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특히, 예비 부부가 이전 결혼의 연금과 사회보장제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기죄를 저지를 때 교회와 목사가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였다. 넷째, 특별위원회는 목사와 교회가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 "법적결혼에 못미치는" 교회 결혼과 비교하여 온전한 헌신과 상호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독교인의 결혼을 하기를 강조하라고 권고하였다. 다섯째, 특별위원회는 교회 결혼을 생각중인 예비 부부들에게 목회자들이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을 삼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대신에 따로 법적 자문을 구하라고 조언하도록, 특히 이전 결혼의 부동산, 자녀 문제가 걸려 있을 경우 더욱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목회자들은 예비 부부들이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와 일하면서 영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결코 자신들을 법률 전문가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누가 그 결혼을 승인하는지에 관계 없이 특히 이민자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결혼식을 치르면서 겪는 어려움과 같은 복잡한 경우에 결혼 당사자들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전세계 여러 결혼 관습의 아름다운 다양성을 인식할 것을 권고 하였다. 목양은 그들이 새로운 나라, 주, 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화되는 과정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이민자 커플들이 뭔가 결핍된 결혼을 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거주하는 주로 부터 그들의 결혼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를 위해 결혼 당사자들을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목회자들이 법적 전문가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결혼 당사자들이 확실한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권해야한다.

II. 권고안

A. 총회는 교회 결혼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관련 토의시, 게리 코닝 (의장), 게일 둔보스 (보고자), 로렌 벨드휘즌 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B. 총회는 기독교 결혼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단 대표가 기독교 결혼에 관한 보고서를 북미주 개혁신교회 소속 교회에 배포하도록 한다.

C. 총회는 북미주 개혁신교회의 목회자들이 결혼예식을 거행할 때 (보고서에서 정의한대로) 단지 교회만 승인하고 거행함으로써 국가를 배제시키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언하며 그로 인하여 결혼 당사자들은 “교회 앞에서 결혼하지만 국가 앞에서는 아닌”²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1. 성경은 모든 사안에 있어서 통치 기구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2. 역사적으로 개혁신주의 교회는 사법권 안에서 결혼을 규제할 수 있는 정부권위의 역할과 권리를 인정해 왔다.

² 2019 총회 안건집, 안건 14, 518 쪽.

3. 미국과 캐나다에서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혹은 교회 결혼의 참여자나 목회자들에게 부정적인 법적문제가 생길 수 있다.

D. 총회는 교회가 캐나다 혹은 미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정부가 인정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이민자들의 결혼을 존중하고, 새로 이민 온 국가에서 기독교인의 결혼과 정부의 권위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하도록 권유한다.

근거:

1. 모든 이민자들의 출신국가의 정부가 결혼을 관장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인정하는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 했을 경우도 있다.
2. 은혜와 용납의 차원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발전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결혼 전통을 인정하기 원한다.
3. 법은 이에 관하여 허용(permissive)할 뿐 규범을 제시하지 않는다.

E. 총회는 목회자들이 법률 전문가처럼 행동하거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며 특히 교회 결혼의 문제에 관해서 더욱 그렇다. 또한, 총회는 목회자들이 필요할 경우 예비 부부들에게 독립적인 법률 상담을 받도록 조언할 것을 권고한다.

F. 총회는 이 보고서를 교회 결혼 특별위원회의 위임을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특별 위원회를 해산한다.

교회 결혼 특별위원회

버나드 야올라
 존 드브리스 (보고자)
 헨리 둔 주니어
 개일 둔보스 (보고자)
 게리 코닝 (의장)
 로렌 벨드휘즌
 데이빗 밴 더 워드
 리스 밴 하튼 (직원 자문위원)